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22-2445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 거주)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10.17.(금)	2025.10.27.(월)	2025.10.28.(화)	2025.10.29.(수)	2025.11.04.(화)	2025.11.07.(금)~ 2025.11.13.(목)	2025.11.16.(일)~ 2025.11.18.(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휴먼빌퍼스트시티.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O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0.17.(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 거주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10.27.(월)	2025.10.28.(화)	2025.10.29.(수)	2025.11.04.(화)	2025.11.07.(금)~ 2025.11.13.(목)	2025.11.16.(일)~ 2025.11.18.(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628)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충청남도 천안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 (발코니 확장 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포함)는「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인지세법 」 제1조 제2항에 의거 시행위탁자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

※ 세액은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입니다.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 (전매)계약서는「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 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2022.12.31. 개정된「인지세법 」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 또는 전매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단,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분양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는 분양 상담전화 (☎1522-2445) 및 공식 홈페이지 (**http://휴먼빌퍼스트시티.com)**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자,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동주택과-38388호(2025.10.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416-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3층 12개동 총 1,541세대 중 일반분양 1,232세대**
[특별공급 668세대(기관추천 121세대, 다자녀가구 121세대, 신혼부부 282세대, 노부모부양 35세대, 생애최초 10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509	1	084.9935A	84A	84.9935	29.8397	114.8332	57.2283	172.0615	48.9373	310	30	30	71	9	27	167	143	10
	2	084.9964B	84B	84.9964	30.0406	115.0370	57.2304	172.2674	48.9389	275	27	27	63	8	24	149	126	10
	3	084.9982C	84C	84.9982	30.4949	115.4931	57.2315	172.7246	48.9400	26	2	2	6	0	3	13	13	2
	4	084.9915D	84D	84.9915	30.9225	115.9140	57.2270	173.1410	48.9361	621	62	62	142	18	55	339	282	21
	합 계									1,232	121	121	282	35	109	668	564	43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구분	공급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5%)		중도금 (60%)						잔금(35%)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대지비	건축비	총분양가	계약시	계약후 1개월이내	26.04.20	26.10.20	27.04.20	27.10.20	28.04.20	28.10.20	입주 시
84A	104동 2,3호	1층	2	147,737,846	308,662,154	456,400,000	10,000,000	12,820,000	45,640,000	45,640,000	45,640,000	45,640,000	45,640,000	45,640,000	159,740,000
		2층	2	147,737,846	319,062,154	466,800,000	10,000,000	13,340,000	46,680,000	46,680,000	46,680,000	46,680,000	46,680,000	46,680,000	163,380,000
		3층	2	147,737,846	331,962,154	479,700,000	10,000,000	13,985,000	47,970,000	47,970,000	47,970,000	47,970,000	47,970,000	47,970,000	167,895,000
		4-5층	4	147,737,846	344,962,154	492,700,000	10,000,000	14,635,000	49,270,000	49,270,000	49,270,000	49,270,000	49,270,000	49,270,000	172,445,000
		6-9층	8	147,737,846	373,762,154	521,500,000	10,000,000	16,075,000	52,150,000	52,150,000	52,150,000	52,150,000	52,150,000	52,150,000	182,525,000
		10-19층	20	147,737,846	387,062,154	534,800,000	10,000,000	16,740,000	53,480,000	53,480,000	53,480,000	53,480,000	53,480,000	53,480,000	187,180,000
		20층이상	22	147,737,846	392,462,154	540,200,000	10,000,000	17,010,000	54,020,000	54,020,000	54,020,000	54,020,000	54,020,000	54,020,000	189,070,000
	102동 3,4호 103동 2,3호	1층	3	147,737,846	318,162,154	465,900,000	10,000,000	13,295,000	46,590,000	46,590,000	46,590,000	46,590,000	46,590,000	46,590,000	163,065,000
		2층	3	147,737,846	328,762,154	476,500,000	10,000,000	13,825,000	47,650,000	47,650,000	47,650,000	47,650,000	47,650,000	47,650,000	166,775,000
		3층	4	147,737,846	341,962,154	489,700,000	10,000,000	14,485,000	48,970,000	48,970,000	48,970,000	48,970,000	48,970,000	48,970,000	171,395,000
		4-5층	8	147,737,846	355,262,154	503,000,000	10,000,000	15,15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176,050,000

	106, 107동2,3호	3층	4	147,737,846	351,962,154	499,700,000	10,000,000	14,985,000	49,970,000	49,970,000	49,970,000	49,970,000	49,970,000	49,970,000	174,895,000
		4-5층	8	147,737,846	365,462,154	513,200,000	10,000,000	15,660,000	51,320,000	51,320,000	51,320,000	51,320,000	51,320,000	51,320,000	179,620,000
	102동 3,4호 103,106, 107동2,3호	6-9층	32	147,737,846	378,962,154	526,700,000	10,000,000	16,335,000	52,670,000	52,670,000	52,670,000	52,670,000	52,670,000	52,670,000	184,345,000
		10-19층	80	147,737,846	392,562,154	540,300,000	10,000,000	17,015,000	54,030,000	54,030,000	54,030,000	54,030,000	54,030,000	54,030,000	189,105,000
		20층이상	108	147,737,846	397,962,154	545,700,000	10,000,000	17,285,000	54,570,000	54,570,000	54,570,000	54,570,000	54,570,000	54,570,000	190,995,000
84B	105동 2호	1층	1	147,742,676	323,757,324	471,500,000	10,000,000	13,575,000	47,150,000	47,150,000	47,150,000	47,150,000	47,150,000	47,150,000	165,025,000
		2층	1	147,742,676	334,457,324	482,200,000	10,000,000	14,110,000	48,220,000	48,220,000	48,220,000	48,220,000	48,220,000	48,220,000	168,770,000
		3층	1	147,742,676	347,857,324	495,600,000	10,000,000	14,780,000	49,560,000	49,560,000	49,560,000	49,560,000	49,560,000	49,560,000	173,460,000
		4-5층	2	147,742,676	361,257,324	509,000,000	10,000,000	15,45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78,150,000
		6-9층	4	147,742,676	374,657,324	522,400,000	10,000,000	16,120,000	52,240,000	52,240,000	52,240,000	52,240,000	52,240,000	52,240,000	182,840,000
		10-19층	10	147,742,676	388,057,324	535,800,000	10,000,000	16,790,000	53,580,000	53,580,000	53,580,000	53,580,000	53,580,000	53,580,000	187,530,000
		20층이상	10	147,742,676	393,457,324	541,200,000	10,000,000	17,060,000	54,120,000	54,120,000	54,120,000	54,120,000	54,120,000	54,120,000	189,420,000
	108동3,4호 109동 2,4호 110,111동 2호 112동3호	1층	2	147,742,676	328,557,324	476,300,000	10,000,000	13,815,000	47,630,000	47,630,000	47,630,000	47,630,000	47,630,000	47,630,000	166,705,000
		2층	3	147,742,676	339,357,324	487,100,000	10,000,000	14,355,000	48,710,000	48,710,000	48,710,000	48,710,000	48,710,000	48,710,000	170,485,000
		3층	7	147,742,676	352,857,324	500,600,000	10,000,000	15,030,000	50,060,000	50,060,000	50,060,000	50,060,000	50,060,000	50,060,000	175,210,000
		4-5층	14	147,742,676	366,357,324	514,100,000	10,000,000	15,705,000	51,410,000	51,410,000	51,410,000	51,410,000	51,410,000	51,410,000	179,935,000
	101동 2,4호	2층	1	147,742,676	329,557,324	477,300,000	10,000,000	13,865,000	47,730,000	47,730,000	47,730,000	47,730,000	47,730,000	47,730,000	167,055,000
		3층	2	147,742,676	342,857,324	490,600,000	10,000,000	14,530,000	49,060,000	49,060,000	49,060,000	49,060,000	49,060,000	49,060,000	171,710,000
		4-5층	4	147,742,676	356,157,324	503,900,000	10,000,000	15,195,000	50,390,000	50,390,000	50,390,000	50,390,000	50,390,000	50,390,000	176,365,000
	101,109동 2,4호 108동3,4호 110,111동 2호 112동 3호	6-9층	36	147,742,676	379,957,324	527,700,000	10,000,000	16,385,000	52,770,000	52,770,000	52,770,000	52,770,000	52,770,000	52,770,000	184,695,000
		10-19층	90	147,742,676	393,457,324	541,200,000	10,000,000	17,060,000	54,120,000	54,120,000	54,120,000	54,120,000	54,120,000	54,120,000	189,420,000
		20층이상	87	147,742,676	398,857,324	546,600,000	10,000,000	17,330,000	54,660,000	54,660,000	54,660,000	54,660,000	54,660,000	54,660,000	191,310,000
84C	105동3호 112동2호	3층	2	147,745,997	332,454,003	480,200,000	10,000,000	14,010,000	48,020,000	48,020,000	48,020,000	48,020,000	48,020,000	48,020,000	168,070,000
		4-5층	4	147,745,997	345,354,003	493,100,000	10,000,000	14,655,000	49,310,000	49,310,000	49,310,000	49,310,000	49,310,000	49,310,000	172,585,000
		6-9층	8	147,745,997	358,354,003	506,100,000	10,000,000	15,305,000	50,610,000	50,610,000	50,610,000	50,610,000	50,610,000	50,610,000	177,135,000
		10-15층	12	147,745,997	371,354,003	519,100,000	10,000,000	15,955,000	51,910,000	51,910,000	51,910,000	51,910,000	51,910,000	51,910,000	181,685,000
84D	101동1호 102,103동 1,5호 104동5호	1층	5	147,734,223	327,265,777	475,000,000	10,000,000	13,75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166,250,000
		2층	5	147,734,223	338,065,777	485,800,000	10,000,000	14,290,000	48,580,000	48,580,000	48,580,000	48,580,000	48,580,000	48,580,000	170,030,000
		3층	6	147,734,223	351,565,777	499,300,000	10,000,000	14,965,000	49,930,000	49,930,000	49,930,000	49,930,000	49,930,000	49,930,000	174,755,000
		4-5층	12	147,734,223	365,065,777	512,800,000	10,000,000	15,640,000	51,280,000	51,280,000	51,280,000	51,280,000	51,280,000	51,280,000	179,480,000
	105,112동 4호 106,107동 1,5호 108,109동 1호	1층	7	147,734,223	336,965,777	484,700,000	10,000,000	14,235,000	48,470,000	48,470,000	48,470,000	48,470,000	48,470,000	48,470,000	169,645,000
		2층	7	147,734,223	347,965,777	495,700,000	10,000,000	14,785,000	49,570,000	49,570,000	49,570,000	49,570,000	49,570,000	49,570,000	173,495,000
		3층	12	147,734,223	361,765,777	509,500,000	10,000,000	15,475,000	50,950,000	50,950,000	50,950,000	50,950,000	50,950,000	50,950,000	178,325,000

	110,111동 1,4호	4-5층	24	147,734,223	375,565,777	523,300,000	10,000,000	16,165,000	52,330,000	52,330,000	52,330,000	52,330,000	52,330,000	52,330,000	183,155,000
	104,105, 112동 1호	1층	2	147,734,223	332,065,777	479,800,000	10,000,000	13,990,000	47,980,000	47,980,000	47,980,000	47,980,000	47,980,000	47,980,000	167,930,000
		2층	2	147,734,223	343,065,777	490,800,000	10,000,000	14,540,000	49,080,000	49,080,000	49,080,000	49,080,000	49,080,000	49,080,000	171,780,000
		3층	3	147,734,223	356,665,777	504,400,000	10,000,000	15,220,000	50,440,000	50,440,000	50,440,000	50,440,000	50,440,000	50,440,000	176,540,000
		4-5층	6	147,734,223	370,265,777	518,000,000	10,000,000	15,9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81,300,000
		6-9층	12	147,734,223	383,865,777	531,600,000	10,000,000	16,580,000	53,160,000	53,160,000	53,160,000	53,160,000	53,160,000	53,160,000	186,060,000
		10-19층	30	147,734,223	397,565,777	545,300,000	10,000,000	17,265,000	54,530,000	54,530,000	54,530,000	54,530,000	54,530,000	54,530,000	190,855,000
		20층이상	26	147,734,223	402,965,777	550,700,000	10,000,000	17,535,000	55,070,000	55,070,000	55,070,000	55,070,000	55,070,000	55,070,000	192,745,000
	101,108, 109동1호 102,103, 106,107동 1,5호 104동5호 105,112동 4호 110,111동 1,4호	6-9층	72	147,734,223	389,265,777	537,000,000	10,000,000	16,85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87,950,000
		10-19층	180	147,734,223	403,065,777	550,800,000	10,000,000	17,540,000	55,080,000	55,080,000	55,080,000	55,080,000	55,080,000	55,080,000	192,780,000
		20층이상	210	147,734,223	408,565,777	556,300,000	10,000,000	17,815,000	55,630,000	55,630,000	55,630,000	55,630,000	55,630,000	55,630,000	194,705,000

※ 본 아파트는 총 1,541세대 규모로 건립되며 금회 1,232세대 분양합니다. 잔여세대는 향후 인허가청과 협의 이후 공급방식 및 공급시기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9935A	084.9964B	084.9982C	084.9915D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형별 단지 위치 주변여건 등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세대 43세대는 일반분양 총 공급세대 1,232세대 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 입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인허가 변경 또는 필지 합병 및 분할, 확정측량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획지별 주택공급면적이 차이가 있으며,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84C	84D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4	3	0	7	14
	장기복무 제대군인		4	3	0	7	1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	4	1	11	20
	장애인	충청남도	4	3	0	7	14
		대전광역시	2	2	0	4	8
		세종특별자치시	2	2	0	4	8
	중소기업 근로자		10	10	1	22	4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0	27	2	62	121
신혼부부 특별공급			71	63	6	142	28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9	8	0	18	35
생애최초 특별공급			27	24	3	55	109
합 계			167	149	13	339	66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4 특별공급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천안시 또는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td></tr>
</table>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21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td></tr>
<tr><td>추천기관</td><td>
<table>
<tr><th>구분</th><th>추천 기관 및 연락처</th><th>관련법규 및 기준</th><th>청약통장 구비여부</th></tr>
<tr><td>국가유공자</td><td rowspan="2">국가보훈처
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td><td rowspan="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td><td>필요없음</td></tr>
<tr><td>장기복무 제대군인</td><td>필요</td></tr>
<tr><td>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td><td>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td>「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td><td>필요</td></tr>
<tr><td rowspan="3">장애인</td><td>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td><td rowspan="3">「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td><td rowspan="3">필요없음</td></tr>
<tr><td>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td></tr>
<tr><td>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td></tr>
<tr><td>중소기업 근로자</td><td>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td><td>「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td><td>필요</td></tr>
</table>
</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td></tr>
</table>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21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td></tr>
</table>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충청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비고

■ 자녀기준

- 이혼•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 (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 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282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2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
<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10%)</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
<tr><td>3단계</td><td>우선공급
(2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
<tr><td>4단계</td><td>일반공급
(1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
<tr><td>5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
<tr><th>순위</th><th>내용</th></tr>
<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
<tr><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
</tabl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td></tr>
<tr><td>비고</td><td>■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td></tr>
</table>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10.17.(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10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단, 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10.17.(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3">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대전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천안시 또는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tr><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
<tr><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td>40%</td><td>60%</td></tr>
</table>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
<tr><td rowspan="6">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6">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
<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
</table></td></tr>
</table>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11.04.(화) ~ 2025.11.13(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11.04.(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 2025.11.04.(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또는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5.11.16.(일) ~ 2025.11.18.(화) 10:00 ~ 16:00 • 장소 -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 견본주택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628)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해 아래 제출기한까지 공급(당첨)유형별 자격 확인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자격 확인 서류 제출 대상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 일정	서류 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전원	2025.11.07.(금)~2025.11.13.(목) 10:00 ~ 16:00	•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 견본주택**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628) - 구비 서류 등 지참 방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예비입주자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대상은 별도 통보 예정	추후 개별 통보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자격 검증 서류 제출 기간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 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 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는 서류 제출 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 일정, 공급(추첨) 방법 등을 홈페이지(**http://휴먼빌퍼스트시티.com**)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추첨 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한 분은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 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격 검증 서류 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구비 서류**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청약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은 불가
	○		인감도장	청약자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비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청약자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인터넷청약 및 기관추천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복무확인서	청약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사기 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 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 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 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등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 계약서 등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일반공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 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 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청약자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다자녀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특별공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 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출산 이행각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7년 이내의 혼인기간 및 혼인여부 확인, "상세"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일 현재, 직장+지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청약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 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 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출산 이행각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비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여부 확인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청약자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 증빙서류	만 19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세대원 전원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 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출산 이행각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자료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17.)**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 변동 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기 및 "주소 변동 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 자격		소득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 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 날인 / '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 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 날인)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 직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	①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 원본 ※ 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 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과세금액 및 사업 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명	① 국민연금공단 ②③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②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직인 날인)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⑤ 해당 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 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세무서/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원본 ※공급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등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해당 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 서식) ② 사실증명서(신고 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 및 소득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 기간 및 휴직 유형(예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든 입증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서류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입증 서류(청약 신청자 본인)

구 분	해당 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②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③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③ 해당 직장/세무서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 실적을 의미합니다.
※ 상기 모든 입증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 휴직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납부내역증명서 발급 불가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 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구분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 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 (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표4] 해외 체류(단신 부임) 관련 입증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유의 사항 등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 부임)	○		해외 근무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연도부터 현재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청약 신청자에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 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

※ 청약 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상기 예외 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적용 불가.

※ 청약 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 국가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에는 단신 부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국가 출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 해당 국가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

※ 청약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외 체류 예외 규정 적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 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 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 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5.11.16.(일) ~ 2025.11.18.(화) / 3일간 10:00 ~ 16:00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 견본주택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628)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 소유 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전산 검색 소요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 실태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전북은행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전북은행 1013-01-6079320, 예금주 :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 체결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 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납부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8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0101-0801'으로 기재)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은 반드시 상기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납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신분증	○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 불가)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온라인(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추가 개별 통지 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인감도장	○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계약금(무통장 입금증)	○		-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본인	※부동산 거래신고가 6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수입인지	○		-	
대리인 계약 시 추가 제출 서류 (본인 외 모두 제3자)	계약자(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본인 발급분만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분은 절대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 계약 불가
	위임장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 불가)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온라인(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계약 시 제출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일정 기간 거주 증명)가 필요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장 수납 불가)
- 당첨의 계약기간은 주택 소유 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전산 검색 소요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 실태, 전산 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 청약 가점 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 소유 현황 등 기재 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며,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시 사업주체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 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 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 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 등은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건축허가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설계 및 시공 관련 개선, 구조개선 법령 및 지자체 지침 준수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세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거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 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 행위, 통장 매매, 위장 전입, 분양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등_「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4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 (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합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이 선정되지 않았으며, 계약자에 한하여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대출은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시 잔금과 사업주체가 대답한 중도금이자를 납부하여야 입주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간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 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알선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알선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에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알선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보대출 전환 시 대출한도, 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릅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은 본 아파트 공급대금 중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잔금 대출과는 무관한 것으로 잔금납부 시 은행권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9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6.05.20.	입주예정일
84A	15,000,000	1,500,000	1,500,000	12,000,000
84B	15,000,000	1,500,000	1,500,000	12,000,000
84C	14,000,000	1,400,000	1,400,000	11,200,000
84D	16,000,000	1,600,000	1,600,000	12,800,000

2.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전북은행**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전북은행 1013-01-6079342, 예금주 :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 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입금 및 발코니 확장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발코니 확장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8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0101-0801"으로 기재)
-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를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일부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환기구(디퓨져) 위치, 시스템에어컨 및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합니다.(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에어컨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 실, 실외기실 등 외부 창호는 계약 미포함 사항이며 향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가 시공하는 발코니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의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가 입주 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경우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를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사양 및 크기,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은 주거만족도 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침실1(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에 기본으로 설치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및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그릴 창호의 규격, 크기, 형태, 턱높이, 연결되는 노출배관의 위치 등은 주거 만족도 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층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층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포함되는 지급 품목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분의 외부 창호는 지역별 단열성능 확보제품으로 설치되며 창호 및 유리(원자재 브랜드, 제조사)는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별도 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 본 발코니 확장 공급 계약은 가구, 전자제품 계약과 무관하며, 추후 견본주택에 전시품목으로 설치되어 있던 제품의 미설치를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사가 시공하는 발코니 확장은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발코니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창호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 시공시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1. 시스템 에어컨

약식표기	구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실내기	실외기		계약 시	2026.06.22	입주 시	
84A	선택1	3대	거실, 주방, 침실1 (천정보강 포함)	삼성전자	(거실)AJ060BN1PBC1 (주방,침실1)AJ032BN1PBC1	AJ040MXHNBC1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선택2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천정보강 포함)		(거실)AJ060BN1PBC1 (주방,침실1)AJ032BN1PBC1 (침실2,침실3)AJ020BN1PBC2	AJ050MXHNBC1	6,900,000	690,000	690,000	5,520,000	
84B	선택1	2대	거실, 침실1 (천정보강 포함)		(거실)AJ072BN1PBC1 (침실1)AJ032BN1PBC1	AJ030MXHNBC1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선택2	5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천정보강 포함)		(거실)AJ072BN1PBC1 (침실1)AJ032BN1PBC1 (침실2,침실3,알파룸)AJ020BN1PBC2	AJ050MXHNBC1	6,900,000	690,000	690,000	5,520,000	
84C	선택1	2대	거실, 침실1 (천정보강 포함)		(거실)AJ072BN1PBC1 (침실1)AJ032BN1PBC1	AJ030MXHNBC1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선택2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천정보강 포함)		(거실)AJ072BN1PBC1 (침실1)AJ032BN1PBC1 (침실2,침실3)AJ020BN1PBC2	AJ050MXHNBC1	5,900,000	590,000	590,000	4,720,000	
84D	선택1	2대	거실, 침실1 (천정보강 포함)		(거실)AJ072BN1PBC1 (침실1)AJ032BN1PBC1	AJ030MXHNBC1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선택2	5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천정보강 포함)		(거실)AJ072BN1PBC1 (침실1)AJ032BN1PBC1 (침실2,침실3,알파룸)AJ020BN1PBC2	AJ050MXHNBC1	6,900,000	690,000	690,000	5,520,000	

2. 가전제품

약식표기	품목	구분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6.06.22	입주 시	
전 타입	비스포크 냉장고(3도어)	선택1	삼성전자	(냉장고)RR40C7995AP (냉동고)RZ34C7965AP (김치냉장고)RQ34C7945AP	4,700,000	470,000	470,000	3,760,000	냉장고장 포함
84A,B,D	비스포크 인덕션(화이트)	선택1	삼성전자	NZ63DB607CFH	910,000	91,000	91,000	728,000	색상 선택불가
84C	비스포크 인덕션(블랙)			NZ63DB503CFT	1,110,000	111,000	111,000	888,000	
전 타입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선택1	삼성전자	DW80F71Y1SEW	890,000	89,000	89,000	712,000	
전 타입	욕실 복합형 환풍기(욕실2개소)	선택1	(주)힘펠	FHD3-C150P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3. 가구 및 마감재

약식 표기	품목	옵션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6.06.22	입주 시	
공통	현관 중문 (84A, 84B, 84D)	실속형	수동 3연동 슬라이딩도어(레일박스 및 보강)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프리미엄형	자동 3연동 슬라이딩도어(레일박스 및 보강)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현관 중문 (84C)	실속형	수동 1슬라이딩도어(레일박스 및 보강)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프리미엄형	자동 1슬라이딩도어(레일박스 및 보강)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욕실특화	공용욕실 + 부부욕실 고급화		6,100,000	610,000	610,000	4,880,000	
84A	주방특화	주방 특화1	- 주방가구 변경(고급화) - 엔지니어스톤(벽체/상판) - 벽체 판넬마감 - 우물천정 및 조명특화 - 고급니켈수전 - 인덕션(화이트) 및 독립형 후드 - 냉장고장(상부플랩장 포함)	13,200,000	1,320,000	1,320,000	10,560,000	· 인덕션 색상 선택 불가
		주방 특화2 (비스포크형)	- 주방가구 변경(고급화) - 엔지니어스톤(벽체/상판) - 벽체 판넬마감 - 우물천정 및 조명특화 - 고급니켈수전 - 인덕션(화이트) 및 독립형 후드 - 비스포크3도어 + 냉장고장	17,900,000	1,790,000	1,790,000	14,320,000	· 인덕션 색상 선택 불가
		주방 특화3 (인피니티형)	- 주방가구 변경(고급화) - 엔지니어스톤(벽체/상판) - 벽체 판넬마감 - 우물천정 및 조명특화 - 고급니켈수전 - 인덕션(화이트) 및 독립형 후드 - 인피니티3도어 + 냉장고장	21,000,000	2,100,000	2,100,000	16,800,000	· 인덕션 색상 선택 불가
	현관&거실 특화	- 아트월 고급화 - 벽체 판넬 마감 - 현관 마감재 고급화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조명특화	실속형	- 거실우물천정 간접등 - 아트월 다운라이트	950,000	95,000	95,000	760,000	
		프리미엄형	- 거실우물천정 간접등 - 아트월 다운라이트 - 침실1,2,3 조명 고급화 (디밍+색온도 조절)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침실1 드레스룸 고급화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벽부형 시스템가구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침실3 붙박이장	- 기본형 → 'ㄹ'형 붙박이장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프리미엄 강마루 (스퀘어)	- 세대 전체시공 - 규격 : 650*650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84B	주방특화	주방 특화1		- 주방가구 변경(고급화) - 엔지니어스톤(벽체/상판) - 벽체 판넬마감 - 우물천정 및 조명특화 - 고급니켈수전 - 인덕션(화이트) 및 독립형 후드 - 냉장고장(상부플랩장 포함)	8,950,000	895,000	895,000	7,160,000	· 인덕션 색상 선택 불가
		주방 특화2 (비스포크형)		- 주방가구 변경(고급화) - 엔지니어스톤(벽체/상판) - 벽체 판넬마감 - 우물천정 및 조명특화 - 고급니켈수전 - 인덕션(화이트) 및 독립형 후드 - 비스포크3도어 + 냉장고장	13,650,000	1,365,000	1,365,000	10,920,000	· 인덕션 색상 선택 불가
		주방 특화3 (인피니티형)		- 주방가구 변경(고급화) - 엔지니어스톤(벽체/상판) - 벽체 판넬마감 - 우물천정 및 조명특화 - 고급니켈수전 - 인덕션(화이트) 및 독립형 후드 - 인피니티3도어 + 냉장고장	16,750,000	1,675,000	1,675,000	13,400,000	· 인덕션 색상 선택 불가
	현관&거실특화	거실/침실2 분리형		- 아트월 고급화 - 벽체 판넬 마감 - 현관 마감재 고급화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거실/침실2 확장형		- 아트월 고급화 - 벽체 판넬 마감 - 현관 마감재 고급화	1,550,000	155,000	155,000	1,240,000	
	조명특화	실속형	분리형	- 거실우물천정 간접등 - 아트월 다운라이트	1,050,000	105,000	105,000	840,000	
			확장형	- 거실우물천정 간접등 - 아트월 다운라이트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프리미엄형	분리형	- 거실우물천정 간접등 - 아트월 다운라이트 - 침실1,2,3,알파룸 조명 고급화 (디밍+색온도 조절)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확장형	- 거실우물천정 간접등 - 아트월 다운라이트 - 침실1,3,알파룸 조명 고급화 (디밍+색온도 조절)	1,650,000	165,000	165,000	1,320,000	
	침실1 드레스룸 고급화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벽부형 시스템가구			2,760,000	276,000	276,000	2,208,000	
	프리미엄 강마루 (스퀘어)	- 세대 전체시공 - 규격 : 650*650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84C	주방특화	주방 특화1	- 주방가구 변경(고급화) - 아일랜드식탁(옵션형 엔지니어스톤 상판) - 엔지니어스톤(벽체/상판) - 조명특화 - 고급니켈수전 - 인덕션(블랙) 및 독립형 후드 - 냉장고장(상부플랩장 포함)	15,250,000	1,525,000	1,525,000	12,200,000	· 인덕션 색상 선택 불가
		주방 특화2 (비스포크형)	- 주방가구 변경(고급화) - 아일랜드식탁(옵션형 엔지니어스톤 상판) - 엔지니어스톤(벽체/상판) - 조명특화 - 고급니켈수전 - 인덕션(블랙) 및 독립형 후드 - 비스포크3도어 + 냉장고장	19,950,000	1,995,000	1,995,000	15,960,000	· 인덕션 색상 선택 불가
		주방 특화3 (인피니티형)	- 주방가구 변경(고급화) - 아일랜드식탁(옵션형 엔지니어스톤 상판) - 엔지니어스톤(벽체/상판) - 조명특화 - 고급니켈수전 - 인덕션(블랙) 및 독립형 후드 - 인피니티3도어 + 냉장고장	23,050,000	2,305,000	2,305,000	18,440,000	· 인덕션 색상 선택 불가
	현관&거실특화	- 아트월 고급화 - 벽체 판넬 마감 - 현관 마감재 고급화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조명특화	실속형	- 거실우물천정 간접등 - 아트월 다운라이트	1,050,000	105,000	105,000	840,000	
		프리미엄형	- 거실우물천정 간접등 - 아트월 다운라이트 - 침실1,2,3 조명 고급화 (디밍+색온도 조절)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침실1 드레스룸 고급화	분리형	- 3연동 슬라이딩도어(2개소) - 벽부형 시스템가구(2개소)	5,500,000	550,000	550,000	4,400,000	
		통합형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벽부형 시스템가구	3,900,000	390,000	390,000	3,120,000	
	프리미엄 강마루 (스퀘어)	- 세대 전체시공 - 규격 : 650*650		2,450,000	245,000	245,000	1,960,000	

84D	주방 특화	주방 특화1	- 주방가구 변경(고급화) - 엔지니어스톤(벽체/상판) - 벽체 판넬마감 - 우물천정 및 조명특화 - 고급니켈수전 - 인덕션(화이트) 및 독립형 후드 - 냉장고장(상부플랩장 포함)	9,100,000	910,000	910,000	7,280,000	· 인덕션 색상 선택 불가
		주방 특화2 (비스포크형)	- 주방가구 변경(고급화) - 엔지니어스톤(벽체/상판) - 벽체 판넬마감 - 우물천정 및 조명특화 - 고급니켈수전 - 인덕션(화이트) 및 독립형 후드 - 비스포크3도어 + 냉장고장	13,800,000	1,380,000	1,380,000	11,040,000	· 인덕션 색상 선택 불가
		주방 특화3 (인피니티형)	- 주방가구 변경(고급화) - 엔지니어스톤(벽체/상판) - 벽체 판넬마감 - 우물천정 및 조명특화 - 고급니켈수전 - 인덕션(화이트) 및 독립형 후드 - 인피니티3도어 + 냉장고장	16,900,000	1,690,000	1,690,000	13,520,000	· 인덕션 색상 선택 불가
	현관&거실특화	- 아트월 고급화 - 벽체 판넬 마감 - 현관 마감재 고급화		1,950,000	195,000	195,000	1,560,000	
	조명특화	실속형	- 거실우물천정 간접등 - 아트월 다운라이트	1,050,000	105,000	105,000	840,000	
		프리미엄형	- 거실우물천정 간접등 - 아트월 다운라이트 - 침실1,2,3,알파룸 조명 고급화 (디밍+색온도 조절)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침실1 드레스룸 고급화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벽부형 시스템가구		2,550,000	255,000	255,000	2,040,000	
	침실2, 3반침장	- 기본형 → 'ㄹ'형 붙박이장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프리미엄 강마루 (스퀘어)	- 세대 전체시공 - 규격 : 650*650		2,650,000	265,000	265,000	2,120,000	

5.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전북은행**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전북은행 1013-01-6079386, 예금주 :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 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8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0101-0801"으로 기재)
-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를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 세대에 한해서만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본 공동주택 컨셉 및 주택형태, 크기, 현시점의 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사전 수량확보 계획하는 모델로서, 입주시점의 시장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가 적의 판단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라며, 자재(모델)의 가격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또는 타 자재(모델)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 시 냉매 배관 및 배수관이 천장속에 설치되어 시스템에어컨에 연결되므로, 별도의 배관 연결구가 시공되지 않으며,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거실/침실1의 냉매 매립배관 및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공사비용은 차감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추후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최종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으로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배관이 설치되어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장치가 설치될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공간협소 및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등기구 위치 등 세대내 조건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 미선택시 거실은 스탠드, 침실1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배관(거실, 침실1)은 설치하지 아니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세대 내 제공되는 무선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에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마감자재(유리, 시트, 타일, 도기류, 수전류, 조명기구 등)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관련 유의사항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인 성명을 인지 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관련 유의사항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조합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홍보물[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 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부대복리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 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조감도 및 배치도, 인근의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공간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 합니다.

■ **단지외부 여건**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구조물은 본 공사 시 형태변경 또는 구조물 지지를 위한 수직부재 등이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지상주차장 환기용 그릴, 제연DA 그릴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조경석 및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삼성대로변과 철도변 일부 대지경계에 높이 15m 방음벽이 설치되어 인접 세대에 조망 및 일조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고,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모형에 표현된 옹벽 및 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변경(재질, 높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 및 CG상에 표현된 주변지역의 레벨 및 공원, 조경 계획은 단순 참고 사항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계약 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 펜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단지 외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 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맘스스테이션, 주민공동시설(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독서실, 키즈카페, 레이디스 라운지 등), 어린이놀이터(4개소), 유아놀이터(1개소), 주민운동시설(2개소) 등
-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조경 식재 및 시설물의 규모, 용도 및 디자인은 공사 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 휴게시설은 모든 사용자를 위한 공동사용 공간임을 확인합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지상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는 선에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부대복리시설(피트니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종료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까지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하고, 단지별 시설차이로 인한 일반관리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수준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변경될 예정입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핑 후 메인배수관에 연결됩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 (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지상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피트니스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운영 방법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은 추후 입주 시 관리주체의 운영지침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에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 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원칙으로 계획, 시공합니다.
- 단지 내 지하/지상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지상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지상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지상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단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부대복리시설 및 외부 휴게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종(식당, 관람집회시설 등)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 옥상층의 옥상조경 및 부속시설(실외기 등) 설치로 인하여, 주변 일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적법하게 계획되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단지내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용 CG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제 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및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의해 주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에 인접하여 펌프실, 전기실, 지하/지상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놀이터, 옥외 부대복리시설 인근 세대 및 상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들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을 통해서 계약 전 위치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 상수위 제어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차량통행구간 유효 높이 지하1층 2.7m, 지하2층 2.7m, 지하2층 2.3m 이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주차대수 : 지하 2,151대, 지상 근생 16대 (전기차 충전공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함)
- 전기차 충전시설은 급속 22대, 완속 87대가 되어있으며, 향후 인허가 조건 이행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 및 대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어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 (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분할 폭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설치)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매립배관과 관련 시설물(콘센트)이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냉매매립배관 및 관련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기본 에어컨이 아닌 추가설치 에어컨은 실외기 설치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를 설치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타시설물과 간섭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깊이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혹은 보조주방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며,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온수분배기는 주방 싱크 하부장에 설치되며, 싱크 하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후드 상부장에는 주방 자동 소화장치가 가스, 전기 겸용으로 설치됨에 따라, 후드 상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상부장 내경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제공되는 빨래건조대는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 문 개폐 간섭으로 빨래봉이 고정될 수 있습니다.
- 전기 쿡탑(인덕션) 옵션 선택시에도 주방 가스 공급용 배관이 설치되며, 상부장 하부에 가스 차단기 설치 후 캡마감 처리가 됩니다.
- 양변기는 관련법에 의거 절수형 양변기를 적용하여 일반 양변기에 비해 배출 성능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욕실에 설치되는 수전류, 위생금구, 배수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천장 환기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발코니, 실외기 설치공간의 경우 비난방공간 입니다.
- 각실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기구류(콘센트, 조명기구)의 사양 및 설치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 (비확장) 선택 시 일부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 샤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의 개소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 설치 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창호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한기에는 최소한의 난방가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주방가구, 욕실가구, 신발장, 침실 붙박이장)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에는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은 본 공고상의 면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비확장형 선택 시 기본형 옵션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기 바랍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장)의 하부에는 부식 등의 하자 방지를 위하여 마루(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신발장 등 가구 뒷벽과 하부에는 벽지 및 타일 등 바닥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도어에 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휨 방지 부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견복주택과 상이하게 가구 배면에 추가 부속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 (예 : 목재, 인조대리석,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따르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조적벽체 (침실,욕실,PD 등의 부분)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 또는 경량벽체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경우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추가 선택품목)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타입 별 평면에 따라 개폐방식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재는 견본주택과 폭과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구조물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 및 두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난간의 위치 및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의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 중 KT와 제휴된 IoT가전기기에 한하며, 연동하기 위한 세대 내부 무선 WiFi용 무선AP 및 연동가전, AI스피커(KT제품에한함)등은 입주자가 구입 및 설치하여야합니다. (입주 시기 정책에 따라 IoT 제휴사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경우 이통사/포털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3년간 무상서비스 제공 후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AI 기능에 대한 안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일부 서비스의 변경 또는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1~2층 적외선감지기, 최상층의 경우는 발코니 및 거실등에 동체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의 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침실 문 뒤 벽에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 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실 발코니 확장여부 및 옵션 선택형에 따라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 방향 및 수량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는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위치 및 색온도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침실,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디딤판, 걸레받이, 욕실 뒷선반, 주방상판 등에 사용된 석재는 자재의 특성상 이음매가 노출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타일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의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2025년 09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1% 이내 면적변동 및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통보 누락으로 인한 당첨자의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일절 책임 지지 아니합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아파트의 견본주택(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은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각 시설의 명칭, 외부 상세계획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경관심의,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 등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지역 개발 등의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 및 개발계획 등은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 및 개발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 및 단지 내 명칭, 동 번호는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분양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검사 전·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청 주관사항으로 당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같은 타입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와 협의하여 입주 전까지 공급 될 예정이며, 필요시 가스공급을 위한 단지정압기가 조경공간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규격)의 가전제품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의류관리기, A/C실외기 등),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품목이며, 제조사 및 모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속도는 지하층을 포함한 총 층수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예정 위치
- 옥외안테나
  1. 옥상층 : 101동, 103동, 104동, 106동, 108동, 109동, 111동
- 중계 장치
  1. 옥상층 : 101동, 103동, 104동, 106동, 108동, 109동, 111동
  2. 지하2층 : 동전기실 4개소(103동, 105동, 107동, 111동)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방송 일부 채널 수신이 불량 할 수 있습니다.

■ 학교

• 천안 부대2지구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유입 초등학생은 학교설립(가칭 천안성성3초등학교)을 통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학교설립시기와 입주시기가 다를 경우 인근 초등학교로 임시 배치되고 이를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임시배치 기간 동안 통학버스를 운영합니다.
• 당 사업지에 따른 유입 중학생은 천안부성학구에 배치할 예정이나 추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은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학군 내 지망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입학)하고 있고 교육정책 및 여건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으며,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의 배정(진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별도의 통학편의(통학버스 운영 등)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부대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일부 개정으로 입주자 등의 동의 여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될 수 있습니다. ※ 위 학교 관련 사항은 해당 교육청, 어린이집 관련 사항은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합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키로 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지연, 세대수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천안 부대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위치하여 도시개발사업 준공일자와 아파트 준공일자가 다를 수 있어 아파트 준공과 토지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천안 부대2구역 조성사업의 개발지연 등으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 및 준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커뮤니티 시설

• 분양시 홍보물,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관련 시설은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계획변경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품개선을 위한 옥상조형물, 입면돌출벽 등이 추가,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조, 조망 등 일부 가려질 수 있고 하부 및 인접세대의 별도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품 및 동선 개선을 위한 동출입구의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상세검토를 통해 규모, 형태, 디자인 및 동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대 창호 주변 진입로가 형성되거나 시설물로 인한 일조, 조망 등 일부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지상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 내에 설치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등 단지조경 및 디자인은 향후 환경개선(기능) 등으로 인하여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기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 기관 주관사항으로 당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단지 전체의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주방은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가 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단지 내 교차로 끝부분은 점자블럭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음, 일조 및 민원사항

- 일부 저층부 세대는 주변대지와의 레벨차이에 따른 옹벽 및 조경으로 인해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동, 선큰, 주차램프, 외부계단,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층간 완충재 관련 법적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주변 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가 각 동 필로티 및 외부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입주민용 및 상가용)는 단지 내 반영될 예정이며, 인근 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주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공용 엘리베이터 주변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계약 카탈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 하고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지상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 (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지상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어 계약 전 위치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동 주변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동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에 견본주택 모형 및 도면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장 출입구, 문주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정면상부 및 측벽에 조명형 BI가 설치되며 인접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옥탑상부에 경관 조명이 계획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휀룸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실외기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인근 세대에 소음 및 분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각 동 주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세대의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고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맘스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에 게시 되어 있는 모형, 단지 조감도 등을 사전에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인근 저층부는 냄새 및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배치상 인접세대 위치 및 창호설치에 따라 동간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전기공급용 지중 개체기 설치로 인하여 미관저해 및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공용홀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 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 이로 인해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는「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11 기타 사항 등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사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알릴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에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전자 서면 등을 통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05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도시기반시설 준공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60일 이상 지정하여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는 실입주월을, 1개월 전에는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피트니스, 독서실, 어린이놀이터 등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 위치, 설치개수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 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 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 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 보일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 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 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해당없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개요	인증 개요
건 축 물 명 : 천안 부대2구역 공동주택	인 증 번 호 : G-SEED-P-2025-0939-5
건 축 주 : 일신건영(주)	인 증 기 관 : 한 국 부 동 산 원
준공(예정)일 : 2028. 09. 29.	유 효 기 간 : 2025.09.25.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416-1 일원	**인증 등급**
층 수 : 지하3층, 지상33층	인 증 등 급 : 우수(그린2등급)
연 면 적 : 267,025.2395㎡ (평가 연면적: 266,095.5332㎡)	인 증 기 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329호, 환경부고시 제2023-172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3.07.01.))
건 축 물 용 도 : 공동주택	
설 계 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에스그룹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그린2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한 국 부 동 산 원 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천안 부대2구역 공동주택
2. 신 청 자 : 일신건영(주)
3.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416-1 일원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토·성토량[illegible]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

성능항목	성능등급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생물서식공간(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 환경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
14. 방범안전 콘텐츠	★
15. 주차공간 추가 확보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한 국 부 동 산 원 장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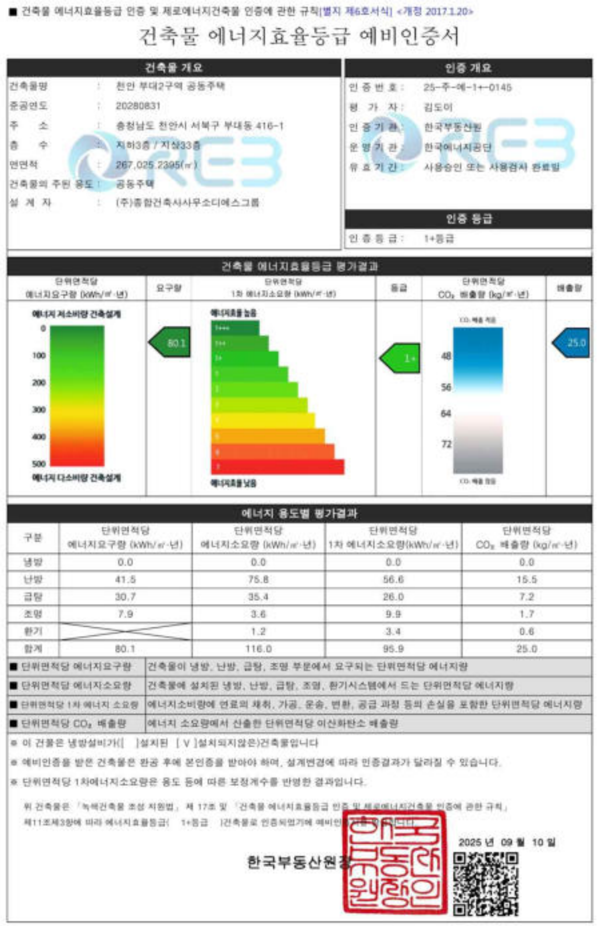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천안 부대2구역 공동주택	인 증 번 호 : 25-주-예-1+-0145
준공연도 : 20280831	평 가 자 : 김도이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416-1	인 증 기 관 : 한국부동산원
층 수 : 지하3층 / 지상33층	운 영 기 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 267,025.2395(㎡)	유 효 기 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인증 등급**
설 계 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디에스그룹	인 증 등 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1.5	75.8	56.6	15.5
급탕	30.7	35.4	26.0	7.2
조명	7.9	3.6	9.9	1.7
환기		1.2	3.4	0.6
합계	80.1	116.0	95.9	25.0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 년 09 월 10 일

한국부동산원장

■ **내진 성능등급 표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 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내진능력(MMI 등급)
내진 1등급	Ⅶ-0.207g

※ 내진 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Ⅰ~Ⅶ)으로 표기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1212025-101-0004500호	**431,329,145,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 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 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 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 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 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 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66-9009)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천일건축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서광이에프	㈜대명기술단	㈜갑인엔지니어링
감리금액	4,923,931,100	1,052,029,700	1,320,381,000	209,000,000
사업자등록번호	213-81-48856	232-81-01003	124-86-10002	104-86-24031

※ 상기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시행사	시공사
상 호	일신건영(주)	일신건영(주)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72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72
법인등록번호	110111-0655477	110111-0655477

■ 현장 및 견본주택 위치 안내

현 장	견본주택	
		■ 현장 위치 :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416-1번지 일원 ■ 견본주택 위치 :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628 ■ 견본주택 운영 시간 : 10:00 ~ 18:00 ■ 분양 문의 : 1522-2445 ■ 홈페이지 : http://휴먼빌퍼스트시티.com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